대학혁신본부운영규정 5-1-51

규정번호	5-1-51
제정일자	2019.11.25
최근개정	2026.3.23.
개정차수	6차 개정
관리부서	혁신지원사업운영팀

[규정명칭 변경 2022.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운영, 대학혁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22.,2022.02.21)

제2조(조직) ① 혁신본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혁신지원사업운영팀), AI・IR센터(AI・IR팀)를 설치하고, 대학혁신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2.21.,2024.01.24.,2025.12.1., 2026.2.6.)

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2.21.)

③ AI・IR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02.21., 개정 2026.2.6.)

④ 운영상 필요시, 혁신지원사업 전문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2.21.)

제3조(기능) 대학혁신본부는 대학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지원사업의 기획·조정·성과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22.02.21., 2026.3.23., 조명변경 2026.3.23.)

1. <삭제(2026.3.23.)>
2. <삭제(2026.3.23.)>
3. <호 삭제(2021.07.22.)>
4. <삭제(2026.3.23.)>
5. <삭제(2026.3.23.)>
6. <삭제(2026.3.23.)>
7. <삭제(2026.3.23.)>

제4조(대학혁신위원회) ① 대학 혁신, 국가재정지원사업 수행 등 기능적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7.22.,조번호 변경 2022.0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대학혁신본부장, 위원은 교무위원 중심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단장 및 학생대표(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02.21., 2026.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혁신 관련 종합계획 수립(개정 2021.07.22.)
2.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및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22.02.21.)
3. 일반재정지원 대학 자체투입재원,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사업 운영의 총괄 점검(신설 2022.02.21.)
4. 자율혁신계획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02.21.)
5.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리 등(신설 2022.02.21.)
6. <삭제(2026.3.23.)>
7. <삭제(2026.3.23.)>
8. <삭제(2026.3.23.)>
9.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02.21., 2026.3.23.)

⑤ 위원의 임기는 혁신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신설 2022.02.2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제4조제4항 제6호·제7호·제8호)